

심 사 보 고 서

[서산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996. 2. 8

총 무 위 원 회

1. 심 사 경 과

가. 제 출 일 자 : 1996. 2. 2

나. 제 출 자 : 서 산 시 장

다. 회 부 일 자 : 1996. 2. 5

라. 상 정 일 자 : 1996. 2. 8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총무과장 이상호)

가. 제안이유

- 민선 자치단체장 체제 출범에 따라 행정 환경의 변화로 각종 여론수렴, 민원안내 등 보좌기능 강화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범위를 여건에 맞도록 조정 일부 개정 시행코자 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 지정중 인력조정예 따라 감축되는 보건소 "결핵객담 관리요원"을 삭제하고, 새로이 "비서" 추가 지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 운용되고 있는 서산시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제3조 5호가 정한 "결핵 객담 관리요원"의 일반직화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 같은 호에 "비서"를 추가하여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으로 개정하여도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없었음

5. 토 론

- 생략

6. 소수의견

- 없었음

7. 심사결과

- 원안대로 가결

제안번호	제 58 호
의결년월일	1996. . . (제 호)

서산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안)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출년월일	1996. 2. 2

서산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 번	안 호	58
--------	--------	----

제출년월일 : 1996.

제 출 자 : 서 산 시 장

1. 제 안 이 유

- 민선 자치 단체장 체제 출범에 따라 행정 환경의 변화로 각종여론수렴, 민원 안내등 보좌기능 강화에 따른 별정직지방공무원의 범위를 여건에 맞도록 조정 일부 개정 시행코자 하려는 것임.

2. 주 요 골 자

-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 지정중 인력조정에 따라 감축되는 보건소 “결핵객담관리요원” 을 삭제 하고, 새로이 “비서” 추가 지정

3. 참 고 사 항

-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 가목

서산시 조례 제 호

서산시 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 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비 서

부 직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별정직 지방공무원의 지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한다.</p> <p>1.~ 4. (생략)</p> <p>5. <u>결핵객담 관리요원</u></p> <p>6.~10. (생략)</p>	<p>제3조(별정직 지방공무원의 지정)</p> <p>.</p> <p>.</p> <p>1.~ 4. (현행과 같음)</p> <p>5. <u>비서</u></p> <p>6.~10. (현행과 같음)</p>